《규원사화》에 반영된 《단군8조》에 대한 분석

김 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단편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체적인 안목에서 분석체계화하면 문제해결의 실머리를 찾을수 있을것입니다.》(《김정일전집》제2권 298폐지)

《규원사화》는 1675년(조선봉건왕조 숙종1년) 3월에 북애자가 편찬한 단군관계비사의 하나로서 저자의 진보적인 력사관과 거기에 담겨진 귀중한 자료들로 하여 고조선의 력사 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고전문헌으로 인정되고있다.

《규원사화》라는 이름은 그 편찬자가 붙인것으로서 《규원》은 그의 별호이며 《사화》란 력사적인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북애자》가 누구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아직 확정적인 견해가 없다.

《규원사화》의 서문에 의하면 17세기 후반기에 생존한 저자 북애자는 청평산인 리명이 쓴《진역유기》 3권을 읽고 국내외문헌들을 연구, 고증한 끝에 《규원사화》를 집필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규원사화》에 의하면 《진역유기》의 저자 리명은 고려시기 사람인데 그이전에 있었던 《조대기》라는 책을 보고 이 책을 서술한것으로 되여있다.

《규원사화》는 크게 4개편(조판기, 태시기, 단군기, 만설)과 서문으로 되여있는데 여기 서 《태시기》와 《단군기》에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력사적사실들이 기록되여있다.

물론 《규원사화》에는 신비한 사실과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담겨진 적지 않은 내용들은 오랜 력사적전승을 통하여 전해진 실제한 사실들을 기록한것으로도 볼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규원사화》의 《단군기》에 기록된것들중에서 매우 주목되는 《단군8조》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단군에 의하여 제정된 《단군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군은 곧 여러 가들과 나라안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각각 해와 달과 음과 양, 네계절의 신 및 산들과 강들, 마을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제사가 끝나자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글을 내렸다.

〈거룩한 신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여 하늘과 땅을 처음으로 열고 온 누리를 주재하며 천하만물을 만들었다. 넓고도 양양하게 어느 사물이나 품어주지 않는것이 없고 밝고도 신령스럽게 자그마한것일지라도 빠짐없이 모두 비쳐주고있다.

거룩한 신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여 하늘궁전을 차지하고 모든 착한것을 게시하고 모든 덕스러운것을 만들었다. 뭇신령이 더없이 상서롭고 더없이 밝은 빛을 지키고 전하여 주나니 이것이 바로 신의 마을이다.

거룩한 신이 하늘궁전에서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시여 우리의 조상이 되였나 니 그 공덕이 다 이루어지자 하늘로 오르시여 신의 마을로 돌아가시였다.

아, 너희 백성들은 오직 하늘의 규범만을 법으로 삼을것이니 온갖 착한것을 살리고 온갖 악한것을 없애라. 본성을 통하게 하고 공덕을 완비하거든 하늘에 오를 지니라. 하늘의 규범은 오직 하나이고 둘은 없나니 너희들이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을 한결같이 한다면 하늘에 오를지니라.

하늘의 규범은 오직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은 모두 한가지이니 오로지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미치게 할지어다. 사람의 마음이 교화되면 하늘의 규범에도 합치되나니 그것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지어다.

- ① 네가 태여난것은 부모가 있기때문이고 부모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였거니 너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늘을 공경하듯이 하며 그것이 나라에 미치게 할지어다. 그것이 곧 충성과 효성이거니 너희들이 이 도리를 체득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재난을 면할수 있으리라.
- ② 날새도 쌍이 있고 헌신도 짝이 있나니 너희 사나이, 아낙네들은 서로 화목하여 원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지어다.
- ③ 너희는 열손가락을 깨물어보아라. 아픔에는 크고작은 손가락의 차이가 없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 서로 등지고 헐뜯지 말고 서로 해치지 말아라. 그래야 집안과 나라가 흥하리로다.
- ④ 너희는 소와 말을 보아라. 그것들도 먹이를 나누어먹느니라. 너희는 서로 사양하고 서로 빼앗지 말며 함께 일하며 서로 훔치지 말지어다. 그래야 집안과 나라가 부유해지느니라.
- ⑤ 너희는 호랑이를 보아라. 세차고 사나운데 신령스럽지 못하니 재앙을 빚어내느니라. 너희는 사나운짓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며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늘 너희들을 하늘의 규범으로 이끌어 만물을 사랑하게 하나니 너희들이 이것을 어긴다면 영원히 신의도움을 받을수 없고 자신과 가정은 재앙을 받으리라.
- ⑥ 네가 만약 낟알을 심은 밭에 불을 지른다면 낟알은 다 없어지고 신과 사람은 성을 내리라.
- ⑦ 너희는 기울어지는것을 붙들어세우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구제하여주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모욕하지 말지어다.
- ⑧ 너희가 비록 두텁게 쌌다 해도 그 향기는 반드시 새여나오기 마련이니라. 너희는 떳떳한 본성을 경건히 유지하고 간악한 마음을 품지 말며 악한것을 숨기지 말고 남을 해칠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늘을 극진히 공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 너희는 복록이 무궁하리라.
 - 아, 너희들 뭇백성들은 삼가 받들어 시행할지어다.

단군이 백성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내리니 신비로운 덕망은 크게 드러났다. 이렇게 몇십년을 지나니 천하는 다시 태평스러워졌고 옛날에 있었던 재난은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곧 단군이 내놓은 8조항의 가르침이다. 지금 8조목으로 나눌수 있다.〉고 한다.》

《단군 8조》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규범적인 조항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게 대하라.

둘째로, 남녀는 서로 화목하여야 하며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라. 셋째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등지거나 헐뜯고 해치지 말라. 넷째로, 서로 사양하고 빼앗지 말며 함께 일하고 훔치지 말라.

다섯째로, 만물을 사랑하며 사나운짓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여섯째로, 낟알을 심은 밭에 불을 지르지 말라.

일곱째로, 기울어지는것을 붙들어세우고 약한 사람은 구제하여주며 그것을 업신여기 거나 낮은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

여덟째로, 떳떳한 본성을 유지하고 악한것을 숨기지 말며 간악한 마음을 품거나 남을 해칠 생각을 품지 말라.

계속하여 《규원사화》에는 이러한 《단군8조》가 후세에 전해져온데 대하여 설명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그후 암시선인이라고 하는 신선이 가야국의 방등왕에게 세상을 다스릴데대한 훈시를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후기신라의 학자 최치원이 쓴 《란랑비》의 서문에는우리 나라에 예로부터 지극한 도가 있는데 이 도에는 당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세가지 교리(공자의 교리, 로자의 교리, 석가모니의 교리)의 뜻을 담고있다고 씌여져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한 도는 곧 《단군8조》의 내용과 련관되여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단군8조》에 관한 내용은 《사문록》,《삼한유기》등과 같은 책에도 실렸으며 지어는 도가의 문집에도 실려 전해졌다고 한다.

이상에서 인용한 《단군8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문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진실로 단군 때에 나온것이겠는가 아니면 후에 만들어낸것인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단군8조》의 내용자체를 놓고는 알수 없으며 그 이후의 전승과정을 통해서만 추측할수 있다.

가야국의 방등왕이 누구인지 또 실재한 인물인지 알수 없으므로 신선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는 믿을수 없다. 더우기 그것이 《사문록》이나 《삼한유기》 그리고 도가의 문집에도 실려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현재 전해지지 않아 잘 알수 없다.

그러나 최치원이가 쓴《란랑비》의 서문은 사실로 믿어진다. 《란랑비》의 서문은 《삼 국사기》에도 실려있는것이다.(《삼국사기》권 제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

만일《란랑비》의 서문에 씌여진대로 우리 나라에 예로부터 있었다는 도(풍류라고도함)가 당시에 류행되였던 도교, 불교, 유교의 종지를 합한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있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단군8조》의 내용과 매우 류사하다. 실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은 유교에서 말하는 교리의 하나이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하는것은 불교에서 내세우는 교리의 하나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최치원이 말한 도의 내용은 그보다 퍽 앞선 시대인 삼국이전시기부터 있었으며 또 그것이 《단군8조》에서 관통되는 근본취지와 비교적 일치하고있는 점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전해져왔다는 도가 《단군8조》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있었다는 가능성을 준다.

따라서 《단군8조》는 단군조선때부터 실제로 있었다고 볼수 있다. 비록 《규원사화》에 실린 《단군8조》는 전승과정에 윤색은 좀 되였겠으나 기본취지는 변하지 않고 단군조선때 의 원형을 비교적 유지하고있다고 인정된다.

이로부터 《단군8조》는 고조선건국후 실제로 단군이 제정공포하였다는 전제우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단군8조》의 매개 조항들을 살펴보면 어떤것은 좋은것이므로 하여야 하고 어떤것은 나쁜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함으로써 모든 조항들이 사회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되여있다. 이것은 《단군8조》가 당시의 사회적행동규범이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단군8조》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것은 우선 국가성립초기 당시의 사회현상이다.

8조의 조항들을 개괄해보면 당시 사회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현상, 남녀가 화목하지 못하고 음탕한 현상,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현상,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현상, 남의 물건을 훔치는 현상, 힘센자가 약한자를 괄시하거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모욕하는 현상, 서로 리간시켜 남을 해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말하여 당시 사회에는 자기와 부모사이에 일정한 구별이 있고 남녀간 및 부부간의 차이가 있으며 밭을 비롯한 자기의 소유지가 확고하게 있으며 힘센자와 약한자, 높은자와 낮은자가 엄격히 구별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원시사회를 벗어나 계급사회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특히 자기의 소유지가 있었다는것은 사회적으로 사적소유관계가 있었고 약한자와 낮은자가 있었다는것은 사회가 벌써 권력과 재부를 틀어쥔 사람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져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노예주계급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예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상이 지배하는 사회로 되여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뿐아니라 사회에는 살인행위의 금지와 소유권보호와 같은것들도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단군8조》의 조항들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지 말고 남의 밭에 불을 지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인명피해와남의 소유권을 해치려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금지하고있을뿐아니라 그에 관한 일정한 보호권을 전제로 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따져보면 노예들의 투쟁으로부터 많은 토지와 재부를 소유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단군8조》가 공포되던 당시의 고조선은 노예주지배계급이 노예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노예소유자사회단계였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단군8조》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것은 또한 범금8조와 조항별내용이 비교적 류 사하다는 점이다.

《단군8조》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지 말데 대한 조항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데 대한 조항이 분명히 규제되고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범금8조의 조항들에 비하여 강 하게 규제되여있지 않지만 규정하는 면에서 서로 통하는 조항들인것이다.

《한서》권28 지리지에 인용된 범금8조는 현재 3개 조항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력사 문헌에 전해지는 범금8조중에 3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부상을 입힌자는 곡식으로써 보상해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도적을 맞은자의 노(奴)로 만들고 녀자의 경우는 비(婢)로 만든다. 만일 훔친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

범금8조는 현재 후조선초기에 제정된 성문법으로 인정된다. 범금8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많이 론의되였다. 후조선의 범금8조는 형법적이면서도 민법적요소가 강한 발전된 노예소유자법이였다.

여기서 알수 있는것은 《단군8조》의 3개 조항이 바로 범금8조의 해당한 조항들과 대등한것이다. 실례로 《단군8조》에는 다섯째 규범으로 《만물을 사랑하며 사나운짓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규제되여있다면 범금8조에서는 《사람을 죽인자는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부상을 입힌자는 곡식으로써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제되여

있다. 실례를 더 둔다면 전자의 넷째 규범은 《서로 사양하고 빼앗지 말며 함께 일하고 훔치지 말라.》라고 하였다면 후자는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도적을 맞은자의 노(奴)로 만들고 녀자의 경우는 비(婢)로 만든다. 만일 훔친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제되여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량자가 꼭같지는 않지만 《단군8조》가 어느 정도 범금8조와 같이 법적성격이 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군8조》를 살펴보면 그것이 당시의 사회현상을 반영한 사회적행동규범으로 서 철저히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여있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기록에서 단군은 《아래에 명령하여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군8조》가 최고의 노예주였던 군주의 의사를 반영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뿐만아니라 《단군8조》에는 정권을 잡은 고조선노예주계급의 기만적인 통치리념과 의사도 반영하고있다. 《단군8조》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착한것과 좋은것을 장려하고 악한짓이나 나쁜것을 하지 말데 대한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이것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이른 바 《홍익인간》(인간에게 큰 리익을 준다는것)사상의 통치리념이 반영된것으로서 국가성립초기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회적규범이였던것이다. 당시 통치계급이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이러한 행동준칙과 행동규범을 정하지 않고서는 갓 수립된 고조선국가의 통치기반이 허물어질수 있는것과 관련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군8조》에는 지배계급의 계급적요구가 은페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적규범인것과같은 기만적인 내용들로 관통되고있다.

《단군8조》의 매 조항들은 통치계급이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하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킬데 대한 강압적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몇가지 사실들은 《단군8조》가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구성된 사회적행동규범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사회적행동규범으로서의 《단군8조》가 단군이 칙령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 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법적성격을 띠였을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단군8조》를 비롯한 고조선의 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주체적립 장에서 더욱 연구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